

---

#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

“경제에 **활력**을, 국민에 **온기**를”

---

2020. 2. 17.



금융위원회



## 목 차

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.....	1
I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.....	3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 .....	4
1.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금융	
2.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금융	
3.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금융	
4. 코로나19 대응	
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.....	16

# 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

## 1

### 주요 추진성과

-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등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
  -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위험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
    - \* 가계부채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 : ('16년말)11.6 ('17년말)8.1 ('18년말)5.9 (**'19.3Q)3.9**
  -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사업자대출, 고가주택 담보대출 등에 대하여 대출규제 강화('19.10월, 12월)
  -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상시점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, 시장 중심의 상시적·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
-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노력 지속
  -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지속 증가하여 750조원 수준
    - \* 은행 중소기업대출 잔액 : ('16년말) 610조원 → ('19년말) 747조원
  - 부동산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기계·재고·매출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대출 확대
    - \* 동산담보대출 잔액 : ('18년말) 0.8조원 → ('19년말) 1.6조원
  - 성장지원 펀드 조성('18~'20년 8조원), 코스닥 상장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
- 핀테크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
  -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제정을 토대로,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('19.4월)하여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\*를 지정
    - \* On/Off형 여행자보험, 리워드형 반려동물 보험 플랫폼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
  -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기반(「신용정보법」 개정, '20.1월) 마련

- 「인터넷전문은행법」 제정,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등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규진입을 촉진

\* 10년만에 부동산 신탁사 신규인가(3개사), 6년만에 보험사 신규허가(1개사)

□ 서민·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

- 이자·수수료 등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

- 최고금리 인하(1.1조원 부담경감), 서민형 안심전환대출(0.2조원 부담경감)을 통해 이자부담을 경감하고, 카드수수료 부담도 완화\*

\*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1.4조원 경감

-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\*, 햇살론<sup>17</sup> 신규 공급, 중금리 대출 강화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

\* 서민금융 공급액 ('08년 이후 누계) : ('15년)22.2조원 → ('19년)49.2조원

-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\*, 채무조정 지원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

\* '17.7월~'19.12월까지 총 40조원(394만건)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

- DLF 종합대책 등 소비자보호 강화와 함께 고령층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도 추진

## 2 아쉬운 점

□ 혁신·벤처 등 생산적 부문이 아닌 가계·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\*과 담보·보증 중심\*\*의 보수적 영업관행이 지속

\* 민간신용에서 부동산 익스포져가 차지하는 비중 54%

\*\* 중소기업의 대출구성 : 담보대출 60%, 신용대출 27%, 보증대출 13%

□ 금융산업이 여전히 수요자인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인 금융회사 관점에서 작동된다는 시각\*이 상존

\* 채무조정제도가 채무자가 아닌 금융회사 관점에서 작동,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·제도 기반 부족 등

□ 저금리 장기화, 금융·IT 융합에 따른 위험요인 등 금융안정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감독·대응 시스템 필요성 제기

## I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### 1

### 업무추진 여건

- (금융여건)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 발생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
  - 고위험 자산으로의 쏠림현상,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필요
- (정책여건) 혁신기업 지원, 핀테크 활성화 등 혁신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, 포용금융에 대한 요구도 증대

< 2020년 정책추진방향 관련 설문조사 결과(일반국민, 전문가) >

- 중점 금융정책 방향 : 혁신(60%) → 포용(17.6%) → 안정(14.8%) → 공정(7.6%)
- 혁신금융 중점과제 : 기업여신 혁신(50%) → 핀테크 혁신(34.3%) → 자본시장 혁신(13.3%)
- 포용금융 중점과제 : 서민지원(41.9%) → 소비자보호(36.7%) →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(19.5%)

### 2

### 업무추진 방향

◇ **확고한 금융안정**을 토대로 **경제활력 제고, 포용금융 확대** 등 '혁신적 포용국가'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

- (혁신금융) 금융이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강화
  - 금융산업 내 경쟁 및 혁신을 확산시키고, 핀테크·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혁신이 지속 창출·확장될 수 있는 환경 조성
- (포용금융) 서민금융 안전망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관행·제도 구축 노력을 지속
- (금융안정) 대내외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위험의 현실화를 방지하고,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

### 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

**“경제에 활력을, 국민에 온기를”**

## 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금융

### (1) 개요

- 가계·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흐름이 혁신·벤처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신, 모험자본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혁신
-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 촉진,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

### (2)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#### 가.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혁신

- ①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유인체계 정비
  - ① 가계·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대책('19.10월, 12월)의 조치사항을 일관되게 시행
  - ②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은행 자본규제를 개선
    - \*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新예대출 시행,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
- ② 담보관행, 기업평가 방식 등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
  - ①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하여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, 더 나아가 일괄담보제도의 도입·정착을 추진
    - 기계, 재고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

#### < 동산·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>

- (회수지원기구) 캠프 등이 금융회사의 부실화된 동산·지식재산(IP)담보 대출의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 설립('20.3월~)
- (공동DB) 동산담보 유형별 평가·회수액, 권리·이력정보 등을 집중·제공하는 금융권 공동 DB 내실화(신정원, '19.8월~)
- (표준기준) 은행권의 통일된 IP 담보대출 취급기준·절차를 반영한 IP 담보대출 표준기준을 마련(특허청 협업과제, '20.3월~)

-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을 지원하는 대출·보증 상품<sup>①</sup>과 IP펀드<sup>②</sup> 마련

- \* ① IP담보대출 상품 취급 금융회사 확대, IP담보+보증 결합상품 출시
- ② IP펀드를 조성하여 기업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기반 조성

- 일괄담보제도 도입, 담보권 존속기한(현행 5년) 폐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안\*의 조속한 국회제출 추진

② 과거 매출액보다는 기술력·미래성장성으로 대출·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방식을 전면혁신

- 미래성장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심사기법, 신상품 도입

- \* 新산업 심사체계(산은), 보증심사사시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 본격 도입(신보),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자영업자 신용대출(SOHO 신용대출) 프로그램 출시 등

-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비중을 확대\*

- \* 현재 보조적 지표로만 활용되는 기술평가의 반영도를 높여 기술력과 신용도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·한도 결정

- 기업의 영업력,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

< 기업의 영업력, 미래성장성 평가지원 인프라 >

- (기업 다중분석 DB) 산업전망, 기업 경쟁도 등 기업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금융회사에 제공(신정원, '20.6월)
- (상거래신용지수) 재무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하도록 새로운 지수 마련·활용 : 한국형 Paydex

③ 적극적인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

○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개편

- (대상·요건) 면책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, 면책 추정제도\*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

- \*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, 법규·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

- (신청·심의)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면책심의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절차적 공정성·투명성 제고

## 나. 자본시장 혁신

### ① 기관투자자 육성, 투자자 저변 확대 등 모험자본 공급기반 마련

#### ① 은행·보험·증권 등 대형 금융회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

- 은행·보험·VC 등 은행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투자규모 확대 및 효율화
- 증권사의 중소·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자본 규제 합리화\* 등을 통해 투자은행(IB) 기능강화 지원

\* 예 : 중소·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 축소

#### ② 공모펀드 활성화, 비상장주식 투자 제약요인 개선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 마련

### ② 기업의 성장단계별(창업-성장-회수)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 정비

#### ① (창업) 창업기업 발굴·보육을 위한 종합 창업지원공간 제공 및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을 추진

- 마포 「Front1」을 통해 입주공간, 자금지원, 체계적 보육, 창업 컨설팅 등을 종합 제공(20.6월 개소)
-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을 현행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, 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, 코넥스 기업(상장 후 3년 이내)으로 확대

#### ② (성장) 새로운 투자기구\*(BDC) 도입, 증권사 업무범위 확대(예 : 벤처대출)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

\*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

#### ③ (회수) 상장제도 개선\* 등을 통해 회수·재투자의 선순환 유도

\* 과거 실적 중심의 진입요건을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정비

## 다. 정책금융기능 강화

- ① 관계부처(산업부, 중기부 등)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을 선정(국가대표 1,000)하여 자금수요별로 종합적·적극적으로 금융지원(3년간 40조원)
  - ① (대상) 관계 부처(중기부, 산업부, 과기부, 문체부 등) 추천 등을 통해 1,000개(+ α)의 혁신기업을 선정
  - ② (금융지원) 3년간 최대 40조원(투자 15조원 + 대출 15조원 + 보증 10조원)을 업종별(벤처/유망산업/핀테크 등) 맞춤형으로 자금지원
  - ③ (투자유치)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(3년간 30개)에 대해서는 국내외 VC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
- ② 혁신성장 부문에 민간투자자금이 유입되도록 마중물 기능강화
  - ①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기업群에 대한 공동보증 프로그램,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제도\* 등 새로운 금융상품 발굴·확산  
\* 중소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신보가 매출 채권을 매입하면서 구매기업의 부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인수
  - ② 혁신·벤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증공급 체계 효율화를 추진
- ③ 자동차, 조선, 소·부·장 등 주력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
  - ① 중소·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 「설비투자 붐업(Boom-up) 프로그램」 신설(4.5조원 규모, 최저금리 1.5%) (2월)
  - ② 산업구조고도화('20년 3조원), 환경안전('20년 1.5조원) 등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도 차질없이 공급
  - ③ 소·부·장 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\*하는 「오픈플랫폼」 구축  
\* 정책금융기관, 투자기관, 대·중견기업, 시중은행이 소부장펀드(0.4조원)와 연계하여 자금지원
  - ④ 해상 안전제고 등을 위해 연안여객 해운사 등을 대상으로 8천억 규모의 「연안 여객·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」을 마련(1분기)

## 라. 금융산업 혁신

### ① 진입·영업규제 개편, 해외진출 활성화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

① 개별 금융업의 인·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(“스몰 라이선스”)하여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촉진

② 금융회사 업무범위 확대\*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

\* 카드사 마이데이터 허용,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 개편 등

③ 新남방·新북방 금융협력 강화 및 해외진출 규제 개선\*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

\*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부담 완화 등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

④ 대형GA 책임경영 강화 및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보호\* 개선 등 금융산업의 책임성 강화방안도 병행 추진

\* 공모규제 회피 차단, 고위험 투자상품 관련 내부통제 및 투자자 설명의무 강화

### ②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, 데이터·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혁신이 지속 창출·확장될 수 있는 환경 조성

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간(~3월)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고, 샌드박스 사례를 실제 규제개선으로 연결

② 빅데이터·AI 등 기술기반 신산업을 적극 발굴·육성하고 디지털 금융분야의 산업·시장·인프라 전반을 고도화

- (빅데이터) 마이데이터(MyData)산업 및 비금융정보 전문CB, 개입 사업자 전문CB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

- (AI) 금융분야 특화 AI서비스 활성화(예: 금융상품추천)를 위한 AI 테스트베드 운영 및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

- (디지털금융) MyPayment,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\*으로 간편 결제·송금, 계좌기반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플랫폼 육성

\* 오픈뱅킹 기능·범위 확대, 이용자 보호 및 보안 강화 등 글로벌 수준의 제도 확립

## ②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금융

### (1) 개요

-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·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, 체계적·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
- 고령층, 청년층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, 불합리한 제도·규제부터 일상적 관행까지 종합 개선

### (2)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#### 가. 서민금융 안전망의 획기적 개선

#### ①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('16~'19년 연평균 6.7조원 공급)

##### ※ 서민금융 공급규모

- ① (햇살론<sup>17</sup>)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급목표 확대: '19년 4천억 → '20년 8천억
- ② (근로자햇살론)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2.2조원 공급
- ③ (미소금융·새희망홀씨)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조원 수준 공급

#### ②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확보 방안 마련

- 복권기금 출연 확대,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 도입, 휴면 금융 자산 출연범위 확대 등 추진

#### ③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

- 「소비자신용법」을 제정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 경감

##### ※ 「소비자신용법」 제정안 주요 내용

- ① 상환조건·계획 변경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'채무조정요청권' 도입
- ② 연체가 지속되는 한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 한정
- ③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잉추심 제한  
(추심총량제, 연락제한요청권, 불법·과잉 추심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도입)
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보다 내실화하고, 1주택 서민차주를 대상으로 '주담대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\*' 도입

\* 예 : 新 Sale & Leaseback (주택매각 후 재임차) 프로그램 신설

## 나.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

### 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(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제정)

#### ① (판매규제) 6대 판매원칙\*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직원의 “상품숙지의무” 및 “상품 핵심설명서\*\* 교부의무” 등을 도입

\* 고객의 적합성·적정성 확인, 설명의무 준수, 부당권유·불공정영업·허위과장 광고 금지

\*\* 상품설명서와 별개로 원금손실위험, 고객부담비용 등 중요 정보를 간략히 정리

#### ② (내부통제)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 절차 전반(설계-판매-사후관리)에 대한 “내부통제기준”을 법제화

\* ① 소비자보호 기능 수행 ‘심의기구’(의장: CEO), ‘전담조직’ 조직 내 설치 의무화

② 판매 전 “소비자영향평가”, 광고 심의, 판매 후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절차 규정화

#### ③ (분쟁조정)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<sup>①</sup>·수용성<sup>②</sup>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

\* ①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·중립성 확보, ② 조정당사자 출석·항변권 보장 등

#### ④ (감독) 빅데이터 기반 상품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
### ②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적극 발굴·개선

#### ① (자동차보험) 보험료·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 가입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마련(국토부 협업, 1분기)

#### ② (실손의료보험)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\* 및 보험금청구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('20.2분기)

\*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(할인·할증) 도입,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

#### ③ (신용카드)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 도입(10월)

### ③ 금융문제 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체계 전면 개편 추진

- 금융교육 관련 콘텐츠(콘텐츠 인증제), 전달채널 다양화, 양질의 교육 인력 확보 등 금융교육의 체계적, 효율적 지원 추진

## 다.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

### ① (자영업자)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, 재기지원 강화

- ① 소상공인에 대한 1%대의 초저금리('20.1.15일 현재 1.48%) 대출 등 맞춤형 상품 공급(2.7조원)
- ② 「자영업자<sup>123</sup> 재기지원 프로그램」을 통해 ①연체 채무정리, ②신규 자금조달, ③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('19.11월~)

\* ① 연체채무정리 : 채무조정 초기 2년간 상환유예 혜택 → 3년후 최대 10년간 분할상환  
② 신규자금조달 : 채무조정 확정 시 심사후 재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  
③ 컨설팅 : 재창업자금 신청 시 사전컨설팅 실시 → ② 심사 시 참고

### ② (고령층) 금융이용에 차별·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

- ①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점포 통합·폐쇄시 대응책\*을 마련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접근성 강화

\* 금융회사간 제휴 활성화, 폐쇄 전 사전절차 보완

- ②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제공, 금융학대 방지방안 마련 등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·강화\*

\*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, 의심거래 처리지연·신고체계 구축 등

### ③ (장애인) 금융이용에 차별·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

- '찾아가는 휴면재산 지급·조회 서비스\*' 등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고,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물리적 보조장치\*\*를 제공

\* 현재 고령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

\*\* 경사로 등 휠체어 이용자 친화적 시설, 점자 신용카드·점자 통장 등

### ④ (청년) 경제자립을 위한 금융지원 대폭 확대

- ① 구직청년에 대한 금융지원(햇살론<sup>youth</sup>, '20년 1천억원),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등 청년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
- ②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평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개발 검토, 청년 맞춤형 재기지원 등 추진

### 3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금융

#### (1) 개요

-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을 체계적·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고, 금융부문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

#### (2)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##### 가. 금융리스크의 체계적·선제적 대응

#### 1 고수익·고위험 투자상품 증가 등에 따른 시장불안요소 관리 강화

- ① (사모펀드) 모험자본 공급 기능 유지를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 하되, 위험관리\*·취약구조\*\*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 도입

\* 운용사 내부통제, 판매사·수탁기관·PBS 감시·건제,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

\*\* 만기 미스매치 구조(유동성 리스크), 복잡한 복층구조, TRS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

- ② (파생결합증권) 기초자산 쏠림에 따른 잠재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기초자산이 다변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

- ③ (환매조건부매매) 익일물(만기 1영업일) 위주 거래로 인해 대량차환 부담 등 시장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강화

\* 익일물 → 기일물 확대유도, 현금성 자산보유(예: 익일물 20%, 2~3일 10%, 4~6일 5%) 도입

#### 2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

- ① (금융보안) IT 리스크 관리 차원이 아닌, 금융회사가 전사적 관점에서 디지털리스크를 관리하는 금융보안 거버넌스 확립

- ② (제3자 리스크 관리) 클라우드 등 IT 아웃소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, 대형 ICT·전자상거래 기업(Big Tech)의 금융업 진출이 소비자보호·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

- ③ (보이스피싱) 보이스피싱 쏠림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 대응 강화

(i) 예방 : 금융회사의 고객 피해예방 의무수준 상향

(ii) 범죄시도 차단 : 빅데이터·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이상금융거래 탐지

(iii) 단속·처벌 :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준 강화, 국제수사 공조 강화

(iv) 피해구제 강화 : 금융회사의 책임 수준 강화, 피해보상 보험 판매 활성화 등 추진

### ③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회사 건전성제도 지속 개선

- (은행권) 거액익스포저 리스크 관리규제 도입(현행 행정지도)
- (보험권) '22년 도입 예정인 新지급여력제도(K-ICS)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

### ④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

- ①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, 구조조정 채권 시장 육성 등을 통해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
- ② 민간전문가, 기업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 구조조정 제도개선 종합방안 마련

## 나. 금융부문의 공정성·책임성 강화

### ① 주주권 행사 내실화 및 공시품질 제고

- ①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(5%룰) 개선방안을 원활히 시행
- ②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

### ②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

- ① (사전예방) 온라인매체를 통한 불법대출광고 유통을 사전차단
- ② (단속·처벌) '적발되면 강하게 처벌'하여 범죄유인 근절

\* 불법영업에 따른 이득을 제한하고, 적발시 형사처벌 강화

- ③ (피해구제) 피해구제 기관간 연계(서민금융, 자활지원기관 등)를 강화하고,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

### ③ 금융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 제고

- 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(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정보공개 확대)
- ② 기후변화 등 미래 아젠다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금융기반 구축
- ③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4천억원 자금지원 실시

## 4 코로나19 대응

### (1) 개요

- 코로나19 확산을 비롯한 각종 대외 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「대외리스크 점검 금융부문 TF\*」를 구성·운영
  - \*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, 금융지원반·금융시장반·자본시장감시반으로 구성
-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련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,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실적점검, 필요시 금융시장안정 조치 등 시행

### (2)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- ① (금융지원) 코로나19 관련 직·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·중견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금융지원 제공
  - (정책금융) 약 2조원\*의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우대 제공, 기존 대출·보증 및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(최장 1년) 등
    - \* 산은 0.3조원, 기은 0.1조원, 수는 1.0조원, 신보 0.3조원, 기보 0.1조원, 지신보 0.1조원 등
  - (은행/카드사) 신규대출·금리감면 및 부도등록 유예(은행),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(카드사)
  - (소상공인) 미소금융 확대(500억원 → 550억원), 초저금리 대출(기업은행)·긴급경영안정자금(소진공)·특례보증(지신보) 제공 등
  - (상담센터) 금감원 「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」 및 각 정책 금융기관 영업점에 상담 창구 설치·운영
- ② (시장안정)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도모하면서,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점검·보완
  - 향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주의·경계·심각 등 단계별로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·탄력적으로 시행
- ③ (시장감시) 금융시장내 풍문 유포·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법·불공정 거래 등 각종 시장교란행위 감시 강화\*(거래소·금감원)
  - \* 1.20 ~ 2.5일 동안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종목에 대하여 33회 시장경보 조치
- ④ (유기적 협업) 확진자와의 접촉자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카드사와 함께 카드결제정보 등을 질병관리본부에 신속히 제공 중

## 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

###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금융



###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금융



### 신규기업 진입과 일자리 창출

